

의안번호	제 332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3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17일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
----------	-----

발의연월일: 2009. 3. 17.

발 의 자: 권광택·송은섭·이영복·
박중갑·박영웅·민경환·
심홍섭

1. 제안이유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규정(안 제2조)
- 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발생시 대처 방안 모색 등 협의회의 기능 규정(안 제3조)
-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의 명시(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위원의 해촉사유 및 회의관련 사항 명시(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 재원 확보
- 다.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축산과와 협의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협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의 발생시 대처할 사항
3.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축산업무 담당과장
 2. 충청북도 가축위생방역기관장
 3. 시·군 축산업무 담당과장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 청주출장소장
 5. 충청북도축산단체협의회장
 6. 수의·축산관련 대학 교수
 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도본부 사무국장
 8.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산관련팀장
 9. 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장
 10.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협의회 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
4.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품위손상 등 위원의 자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시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전염병예찰 실시 요령」에 따라 실시한 예찰과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및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가축방역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방가축방역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